



제433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조치 의무 확대 등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1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조치 의무 확대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6일 손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Ⅲ. 검토의견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조치 의무 확대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항타기 등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해체·조립 시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자는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주거 밀집지역에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76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① --- ----- ----- ----- ----- -----

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

-조립하거나 고장·파손 등에 따른 수리를 하는-----

-----.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또는 수리를 실시하려는 자는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경 내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동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의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벌칙) -----

-----.

1. -----

-----제76조제1항 전단

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 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 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 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 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 ----- ----- ----- ----- ----- ----- ----- ----- ----- ----- <u>제76조제2항, 제77조제1</u> <u>항</u> ----- ----- ----- -----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 제76조제1항 전단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하는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작동”이나 “설치·해체·조립 등”은 건설도급인에게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 중 대표적인 것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장·파손 등에 따른 수리”의 상황을 배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용어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알리도록 한 개정안 제76조제1항 후단은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

1)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²⁾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주거 밀집지역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의 설치·작동 시 전도방지 대책의 작성 및 고용노동부장관 제출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와 의무위반에 과태료를 규정한 개정안 제76조제2항 및 제175조제4항제3호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착공 전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과되고,³⁾ 이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

2)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⁴⁾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대한 조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정안의 “고장 및 파손의 수리작업 등”도 이미 포괄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문구를 추가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사고

는 항타기 수리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항타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이며,⁵⁾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밀집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거 밀집지역이 있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토·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4)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5) 항타기 지지대의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부 누유로 인한 항타기 지지기능 상실(수리 중 발생한 사고 아님)

문 의 처
02)6788-5545